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74 발의연월일: 2023. 8. 10.

발 의 자:권은희·이태규·최연숙

조경태・ 강기 윤・ 金炳旭

서병수 · 하태경 · 양향자

정성호 · 정희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내용과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나며,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폭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교권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 학 생의 일반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 책 규정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단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 수립하여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 다.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 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

- 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 마. 행동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지도 또는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교원이 성실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함(안 제18조).
- 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 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고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 25조까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수립 • 추진체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계획
-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 3.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관리에 관한 사항
- 6.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하

- "교육감"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 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행동교칙의 수립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행동 관리를 위하여 행동교칙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행동교칙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학교가 소속된 지역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동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행동 기준에 관한 사항
 - 2. 학생의 행동교칙 위반에 대하여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

한 사항

- 3. 제2호에 따른 조치의 보고 및 적절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 제2호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학교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행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학교장은 행동교칙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 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교육지원청장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군·구교권보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10조(행동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교원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행

동교칙에 규정된 행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행동 교칙에 따라 정해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로 행동교칙에 규정될 수 있는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설명하는 등의 쓰기 과업 부과
- 2. 포상 등 특권의 박탈
- 3. 쉬는시간,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남기기
- 4. 교실정돈과 같은 교내 봉사활동
- 5. 학생 소유물의 압수 또는 폐기
- 6. 교실 제외 처분
- ③ 제2항제6호의 교실 제외 처분은 학생이 교원의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소란을 일으키는 등 학급의 안정 유지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고, 교원은 교실 제외 처분을 받은 학생도 해당 처분을 받는 동안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교원은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행동교칙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 은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피해교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 4.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

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관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
- 제1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7. 퇴학처분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전에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 ④ 관할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⑧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 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 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제15조(특별휴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제16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 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한 법률지 원단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면책) ①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또는 이 법 제10조에 따른 행동교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②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3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관련한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행위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해당 학교의 행 동교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 또는 조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원은 이 법, 관계 법령 및 학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19조(의견 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이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되어 소속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

관에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 제20조(분쟁 조정 신청 등)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 ②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제21조(처리기간) ① 시·군·구교권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교권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군·구교권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군·구교권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시·군·구교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3조(분쟁의 조정) ① 시·군·구교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시·군·구교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시·군·구교권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시·군·구교권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24조(조정절차 등) ①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군·구교권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25조(개선의견의 통보) ① 시·군·구교권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그 개선의견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 제26조(연차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하여 추진된 정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 제28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 조정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접수하여 미처리 중인 분쟁 조정 사건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 따른 시·군·구교 권보호위원회에 이관하여야 한다.